
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(이광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48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1. 21.

발 의 자 : 이광희 · 김문수 · 이재강
채현일 · 양문석 · 문금주
허영 · 윤건영 · 이주희
허종식 · 윤종균 · 박지원
강득구 · 이훈기 의원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임에도 지방자치단체 인력 및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해 정확한 현황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,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연구와 통계 수집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 지정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.

또한, 현행법은 재난복구 및 구호 목적으로 사용료·대부료를 면제하는 경우 지방의회 동의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공유재산을 신속하게 활용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의 조정이 필요함.

이에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재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‘공유재산 총조사’와 ‘공유재산 관리 분석·진단’을 도입하고 전문기관의 지정 근거도 마련하며 재난복구 및 구호의 경우 사

용료·대부료 면제 등에 관한 지방의회 동의절차와 공유재산심의회의
심의 대상 요건을 간소화하고자 함(안 제6조의3 등).
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3(공유재산 관리 등의 분석·진단 등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공유재산의 관리 등에 관한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할 경우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.

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 및 진단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그 분석과 진단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른 분석 및 진단의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6조제2항제1호 중 “따라”를 “따른”으로, “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”를 “및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”를 “따른 공유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4호

중 “따라 무상으로”를 “따른”으로, “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”를 “간 재산의 무상 이관에 관한 사항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5호 중 “제24조 또는 제34조”를 “이 법(제24조제1항제4호)로, “그 밖에”를 “제34조제1항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) 및”으로, “따라”를 “따른”으로, “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”를 “대부료 면제에 관한 사항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6호 중 “경우”를 “사항”으로 한다.

제2장에 제1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8조의4(공유재산 전문기관의 지정 등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유재산 관련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② 행정안전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2.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
3. 이 법이나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전문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

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

⑤ 공유재산 전문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4조제1항제4호 중 “일정”을 “복구 및 구호 목적으로 일정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하는 경우

제34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복구 및 구호 목적으로 일정 기간 대부하는 경우

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4조의2(공유재산 총조사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공유재산 총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총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
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총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제44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.

⑤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총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

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6조의3, 제18조의4 및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6조의3(공유재산 관리 등의 분석·진단 등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공유재산의 관리 등에 관한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.</u> <u>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할 경우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.</u> <u>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 및 진단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그 분석과 진단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.</u> <u>④ 제1항에 따른 분석 및 진단의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
제16조(공유재산심의회) ① (생략)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	제16조(공유재산심의회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

의한다.

1.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
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
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
나 변경하는 경우

2.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
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
는 경우

3. 제11조에 따라 일반재산을
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
려는 경우

4.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
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
는 경우

5.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
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
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
경우

6.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·
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
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
우

③·④ (생략)

<신설>

-----.

1. -----
따른-----
--및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
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

2. -----따른 공유재산의
용도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
사항

<삭 제>

4. -----따른-----
간 재산의 무상 이관에 관한
사항

5. 이 법(제24조제1항제4호--제
34조제1항제3호의 경우는 제
외한다) 및-----따른-----
-----대부료 면제에 관
한 사항

6. -----

-----사
항

③·④ (현행과 같음)

제18조의4(공유재산 전문기관의
지정 등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

공유재산 관련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② 행정안전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
2.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

3. 이 법이나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전문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

제24조(사용료의 감면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1. ~ 3. (생략)

4.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
<신설>

②·③ (생략)

제34조(대부료의 감면)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32조에도 불구하고 그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

⑤ 공유재산 전문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4조(사용료의 감면) ① -----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-----
복구 및 구호 목적으로 일정

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하는 경우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34조(대부료의 감면) ① -----

-----.

1. · 2. (생략)

<신설>

② ~ ④ (생략)

<신설>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3.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
복구 및 구호 목적으로 일정
기간 대부하는 경우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44조의2(공유재산 총조사) ①

행정안전부장관은 공유재산의
효율적 관리 등을 지원하기 위
하여 매 5년마다 공유재산 총
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
따라 공유재산 총조사를 실시
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
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행
하게 할 수 있다.

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
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
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에 드는
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총
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제44조
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
으로 본다.

⑤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총
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
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

다.